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24. 08. 09.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방향 설정

박 혜 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
오 병 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이 연구는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기초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CONTENTS

1. 연구목적 및 방법
2. 법 제도 분석
3. 아산시 법 제도 분석
4. 타 지자체 사례 분석
5.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방향 및 정책제언

요 약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공공디자인 관련 법 제도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면서, 아산시 공공디자인 관련 법 제도 및 경관계획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음

◦ 아산시 진흥계획 재정비 계획의 방향으로서 국가 및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계획의 방향과 내용 반영,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하고 관련 계획과 연계, 실행중심의 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을 통해 공공디자인 질적 수준 개선 기반 마련의 4가지를 제시하였음

◦ 앞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계획은 '실태조사 및 분석, 관련 동향 및 정책 분석', '비전,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공공디자인 구축 및 관리 계획 수립', '사업발굴 및 실행계획', '제도 개선방안 제시',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재정비',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 '관련 분야 협력 및 주민참여', '사업 매뉴얼 및 사후 관리방안'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 구성별 세부적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였음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0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법에 근거하여 국가 단위의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음
- ❍ 법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중에 있음
- ❍ 또한 광역시·도를 비롯하여 기초지자체에서 역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를 비롯한 충남의 각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 한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경관계획이 유사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경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계획 간 연계성 및 각 계획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
- ❍ 이러한 가운데 아산시의 경우 2019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계획의 재수립 시점이 도래한 상황으로 계획 재수립 이전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서 국가계획인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 최근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① 공간적 범위 : 아산시

② 내용적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련 법규 및 계획,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며, 이는 과업지시서 등 계획 수립 용역 발주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연구의 범위는 관련 법규 및 계획,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등임

❍ 문헌조사 및 분석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내용, 공공디자인의 범위 등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 및 범위, 성과 및 한계 등
  :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방향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계획의 구성 및 위상, 아산시 해당 부분(발전방향)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아산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공디자인의 범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범위 등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 계획 구성 및 내용 분석, 계획 간 유사 및 중첩된 내용 분석
- 타 지자체 사례
  : 2023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를 통해 계획 내용 구성 및 지자체별 특징 분석
  :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발주 과업지지서를 통해 타 지자체와의 차이점 분석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방향 제시

02 법 제도 분석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그림 1]과 같이 “공공시설물등”이란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그 밖에 이들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이라 정의하면서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서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에서 의미하는 공공시설물을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이것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도 알 수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은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의 도로시설물,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물, 전원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물로서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문화관광시설, 가로녹지시설, 환경관리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 허가시설, 그 외 기타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공공디자인 사업'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변화 및 안전안심, 생활개선 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이를 모두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2조(정의)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그림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공공시설물등의 정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 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 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그림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별표 1])

분류		시설물의 종류
사회기반시설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포함)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 자전거도로,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 포함),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방음벽,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가로등, 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	지하철출입구(캐노피 포함,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지하철안내표지판, 환기구(흡·배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육갑문,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기타공공시설물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종합유선 방송,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환경관리시설	휴지통, 환경미화원 대기소, 공중화장실,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보행자 안내표지,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정류소, 택시 표지판,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교통 감시시설, 볼라드, 보호펜스,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유람선, 수상택시, 광장,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표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에서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별표 2])

분류		세부항목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범용디자인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	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광역시·도, 시장·군수·구청장도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시·도는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을 반영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에서는 국가에서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음

❍ 내용 구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종합계획은 전문인력 육성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은 사업이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계획의 세부실행 방안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수립하고 있음

❍ 즉, 국가가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종합 진흥계획은 큰 틀에서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반면,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실행계획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그림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림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지역계획 수립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시·도/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도/시·군·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림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내용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2. 국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1)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의 방향

①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및 한계, 성과

-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에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 공공디자인 정책의 중기전략 계획으로서,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다양한 분야 협력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음
- ❍ 현재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국가의 공공디자인 진흥 단계별 구상을 보면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음
- ❍ 〈표 3〉과 같이 1단계는 공공디자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을 공공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통합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단계별 구상

구분	주요내용
1단계 (2018~2022)	-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공공디자인 방향 제시 -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지속적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2단계 (2023~2027)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발전시켜 **공공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향 제시 - **통합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가치 재정립 -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기반의 확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의 내용 연구자가 재구성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5개의 전략과 각 전략에 따른 19개의 과제, 각 과제에 따른 49개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제시하고 있는 추진과제는 ①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대비, ②모든 사람을 위한 걷기 편한 가로 및 관광지 조성,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행정서비스 디자인, ③생활편의를 위한 안내체계 개선 및 실내공간디자인, ④생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공간 디자인, 시설물 통합 및 개선, 틈새공간 활성화, ⑤주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 및 행정시스템 개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의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교통안전 디자인
	재난대비 안전 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누구나 걷기편한 거리 조성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공공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확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8),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 한편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최성호, 2022)에서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있음

❍ 나라장터에 공고된 사업의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유형화 분석하여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의 전략별로 성과와 한계, 이에 따른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전략에 의해 범죄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이 활성화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및 재난안전 영역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전략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보행약자를 위한 사업에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고령자 대상의 인지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위해 가로와 안내체계 개선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거리사업 또는 단편적인 안내체계 개선이라는 한계가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문화 및 체육, 관광 등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공간 전반에 있어서 접근이 필요함

❍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전략 일환으로 디자인거리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관과 연계한 야간경관사업 측면에서의 접근이었으며, 틈새공간의 발굴이나 도시브랜드 관리에서 취약했다는 한계가 있어, 공공디자인 고유의 조형적 기능성 강화와 다양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나,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고시 부재와 심의 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차원에서 법 제도적 문제 개선이 필요함

❍ 즉, 안전과 편의의 주제는 지속 연계하면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안전과 재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공공공간 전반적으로 편의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이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5〉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전략	성과	한계	개선방향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활성화	소규모 단위 사업 중심으로 확산성 부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안전 및 재난안전 영역**에 집중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보행약자 배려 사업 확산	보행, 접근성 개선 사업에 집중	정보와 콘텐츠 및 **인지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체계 확산 필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도시 중심으로 가로와 안내체계 중심의 지자체 사업 활성화	거리사업 또는 단편적인 안내체계 개선에 한정	**지역 불균형 해소, 문화 및 체육, 관광** 등 생활체감 통합적 접근, **공공공간 전반 접근 확산 필요**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디자인거리사업 등 디자인의 차별화 및 조형성 강조	경관과 연계한 야간경관 접근 중심, 틈새공간의 발굴이나 도시브랜드 관리에서 취약	**심미성과 감성 등 공공디자인 고유의 조형적 기능성 강화**와 다양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필요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 운영 및 위원수 확보	위원회 운영 고시 부재 및 지역위원회 심의 수준 저하	법 제도적 문제 개선

자료 : 최성호(2022),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②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 ❍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가 2022년 3월에 공고가 났으며, 공고 내용에 의하면 연구기간은 2022년 1월~2022년 12월까지임
- ❍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이 연구를 토대로 수립되며 연구내용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연구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분석함으로써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함
-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모법이 없는 유니버설·범죄예방·사회문제 해결, 공공조형물 조례 등을 통합하는 것을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과업 범위에도 연결되어 공공디자인의 현황 조사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관련 조례와 정책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 ❍ 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 즉,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아우르면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를 확장하여 제시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이 될 것이라 볼 수 있음
- ❍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공공디자인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표 6〉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과업지시서 주요내용

구분	과업 범위 및 내용
공공디자인의 현황 조사	- **중앙정부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경관법, 건축관련법, 옥외광고물법 등) 및 정책 조사, 문제점 파악**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지침, 정책과 실행사례 등 조사, 문제점 파악** - 공공디자인 관련 해외의 최신 경향, 실행사례 조사 및 시사점 제안 - 공공디자인 현황 파악을 위한 제한적 실태조사 실시 **: 지자체(광역 및 기초) 및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관련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샘플링 실태조사(지자체는 필수)** **: 공공디자인 규모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기타사항 샘플링 실태조사 (지자체는 필수)**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전략	- 공공디자인이 담아야 할 기본목표와 방향 구상 - 공공디자인의 실천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 과제 제안 :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포함 - 공공디자인 계획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상 - 공공디자인 전담기관 활성화 방안 등 제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정의, 체계, 관리에 관한 개념 수립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인력 육성 방안 - 공공디자인 용역수행을 위한 기관 및 민간인력 육성 방안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 공공디자인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제도 등과 관련 방향 제언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력방식 연구 - 공공디자인 사업협의체 구성 등 국민의 참여사항 제안
과제수행과정에서 관련 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반영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협의회 및 토론회 개최 운영
제1차 기본계획 추진성과와 개선점	- 추진과제별 추진성과 및 개선점 도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안	-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23~2027) 수립 - 계획의 목표, 세부 사업 및 5개년 로드맵 제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① 구성 및 기본방향

- ❍ 충남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따르면서 기 수립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충남 전체의 포괄적이면서 개념적인 계획 수립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2019년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음
- ❍ 계획은 공공디자인 현황 및 인식조사,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목표, 전략 제시 및 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디자인 활용 및 유지관리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도 차원에서의 공공디자인 방향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함에 있어서, 국가 종합계획에서의 5가지 전략인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과 시·군 시범사업 리스트 조사자료를 토대로 4가지 전략을 도출하였음
- ❍ 4가지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충남'을 기본개념으로 '안전을 더하는 안전한 충남', '사람이 모이는 사람중심 충남', '해양, 산림, 생태가 숨쉬는 생태관광 충남',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역사 충남'이며, 이에 따른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시·군에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적용사항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별 필요사항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가이드라인 핵심요소	–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주요 핵심요소 유니버설(무장애) / 범죄예방(도시안전)
가이드라인 필수사항	– 충청남도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사항
가이드라인 권장사항	– 충청남도에서 가급적 적용을 권장하는 지침사항

[그림 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전략과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출처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② 계획의 위상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큰 틀에서 충남이 지향해야 하는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도시이미지를 도출하여 충남형 공공디자인 사업과 전략별 시·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시·군이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있음([그림 7])

○ 즉,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15개 시·군의 공공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충남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전략, 이에 따른 사업이나 시·군별 발전방향,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에서 이를 따르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전략별 제안하고 있는 사업은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연계가 가능한 중앙부처도 제시하고 있어 시·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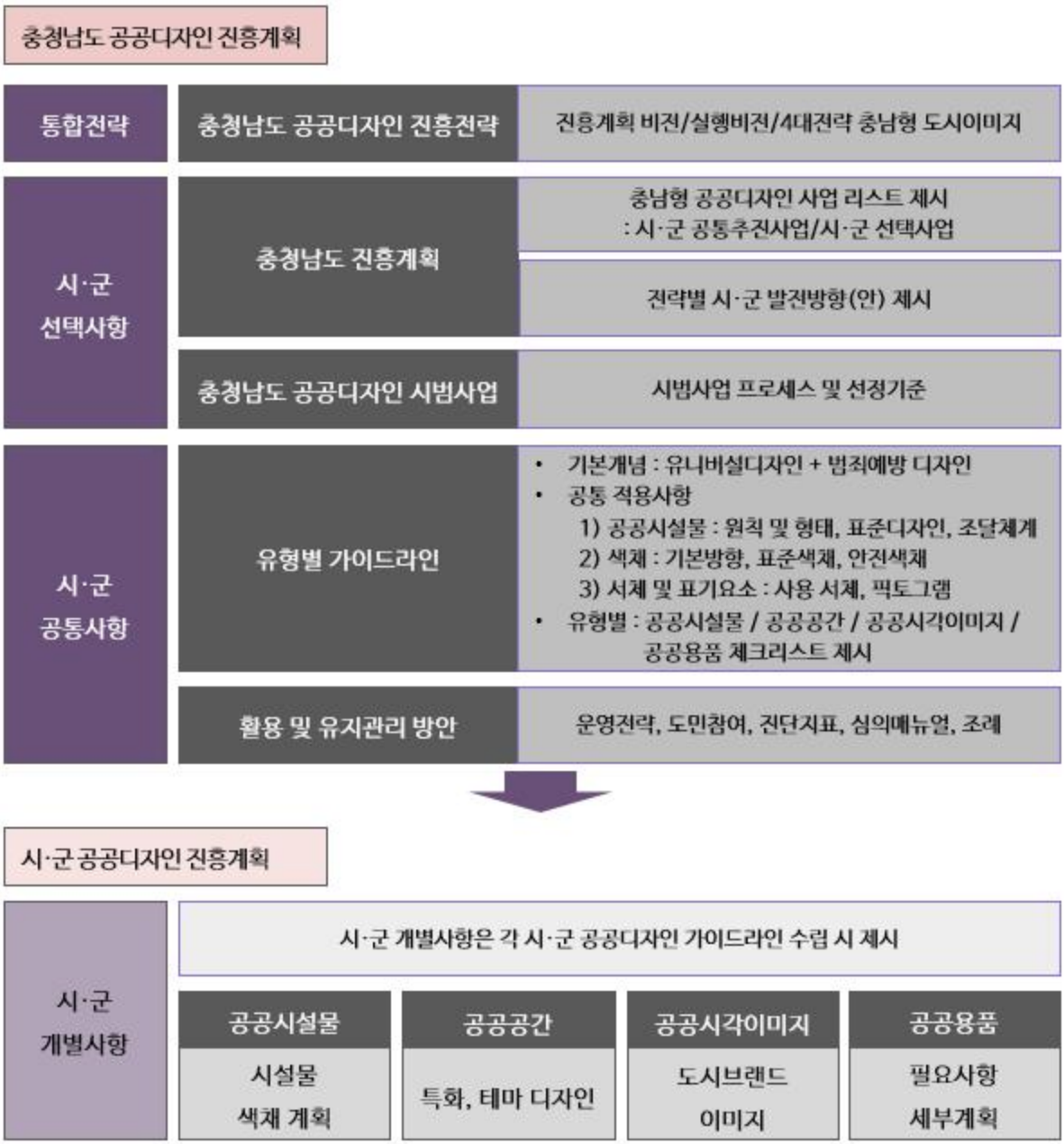

[그림 7]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의 도와 시·군의 역할

자료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표 7〉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중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제안

실행전략		공공디자인 사업리스트	추진체계		연계 중앙부처	추진일정
			충청남도	시·군		
PART _ 1 시·군 공통추진사업						
기초가 튼튼한 충남	역량강화	도민 공공디자인 교육	○		문체부, 교육청	'20년~'22년
		공무원 전문 교육	○		문체부, 행안부	
		접경지역 공동개발	○	○	문체부	'21년~'23년
중점사업 안전한 충남	범죄예방	생활안전주민참여형		○	문체부, 경찰청	'20년~'22년
		범죄예방형		○	문체부, 경찰청	
		학교폭력예방형		○	문체부, 교육청	
		여성대상범죄예방형		○	문체부, 여가부	
	생활안전	어린이교통사고예방형	○	○	문체부, 행안부, 교육청	'20년~'22년
		주차환경조성형	○	○	문체부	
		산업재난예방형	○		문체부, 소방방재청	'21년~'23년
		재난대비용품 개발형	○		문체부, 소방방재청	
사람중심 충남	유니버설	보행환경조성형	○	○	문체부, 국토부	'20년~'22년
		관광 보행환경조성형	○	○	문체부, 국토부	
		노인건강 환경조성형	○	○	문체부	
		서비스시설물 개발형	○	○	문체부	'21년~'23년
		산업단지 녹지조성형	○	○	문체부, 국토부	
PART _ 2 시·군 선택사업						
생태관광 충남	문화관광	해안·수변관광 환경조성형	○	○	문체부	'20년~'22년
		산림관광 환경조성형	○	○	문체부	
		관광 안내체계 구축형	○	○	문체부	'21년~'23년
		관광연계 주민공간조성형	○	○	문체부	
문화역사 충남		테마거리 시설물통합형	○	○	문체부	'21년~'23년
		관광 야간경관조성형	○	○	문체부, 문화재청	

출처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③ 전략별 시·군 발전방향(아산시 해당 부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는 전략별 시·군의 발전방향도 제안하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구도심과 지역

재생, 범죄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내용을 살펴보면, 아산시의 택지개발사업 확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여건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8〉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중 전략별 아산시 발전방안

함께 더 성장하는 통합 인프라 형성

①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_ [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식 공원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근로자들이 틈틈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업무시너지 향상 도모

②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의 통합적 안전환경 조성 _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에 안전지대 인지 사인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분리된 지역이 아닌 통합적인 안전환경 시스템 구축 등 격차없는 지역 환경 조성

③ 노후된 구도심 환경 개선으로 밝은 통학로 조성 _ [용화동 49-16 일원]

· 노후된 거리로 낙후된 이미지를 조성하는 용화동 일원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전 보행로확보 등 환경개선 조성

④ 안전마을 사업을 통한 슬럼화 극복 _ [배방읍 일원]

· 배방북수지구 도시개발구역과 함께 연계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통해 활력있는 마을 분위기 연출로 지역 애착심 제고

⑤ 온양온천의 상징적 이미지 부각 및 안전 사인 시스템 구축 _ [온양온천 주변]

· 온양온천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안전 사인시스템 구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도심 이미지를 탈피하여 방문객 및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⑥ 공세리성당이 가진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여건개선 _ [공세리성당 및 공세리 일원]

· 공세리성당을 중심으로 100년이 된 골목길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벽화를 둘러보고 쉴 수 있도록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공세리성당의 형태를 활용한 소음금지 사인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출처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03 아산시 법 제도 분석

1.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을 반영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는 국가가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의 연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광역계획과의 연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그림 8])
- ❍ 한편, 아산시의 공공디자인 범위는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으로 볼 수 있음(〈표 10〉)
- ❍ 즉, 아산시의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교량 및 지하차도, 터널, 회전형 교차로, 방음벽 및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차도 및 보도, 산책로 및 등산로, 임시 가림벽,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브랜드 시각이미지 등까지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음
- ❍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의 색채, 재질, 조형 등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8]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상 지역계획 수립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과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지역계획 수립 내용 구성 차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그림 9]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상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0〉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내용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공청사, 공공(문화/복지, 교통,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 아산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2019년에 수립하였으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 공공디자인 비전 및 기본방향 제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였음
-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우선 관련 상위계획과 아산시 행정현황 및 관련 법 제도를 조사하고, 권역별 공공디자인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 조사결과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아산시 경관계획 및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아산시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방향을 도출하고,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을 따르면서 아산시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략 도출 및 이에 따른 권역별 공공디자인 방향과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음
- ❍ 또한 '공공성', '범죄예방', '통합성', '유니버설디자인', '정체성'이 아산시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교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아산시에서 공공디자인 계획 시 반영하도록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음
- ❍ 실천전략으로서 디자인 행정조직 구성과 역할, 민관협력 방안, 공공디자인 인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식 도입 제안,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 즉,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현황 조사, 공공디자인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표준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 실천전략 제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은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역계획과 연계,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하지만 교육은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 그치고 있어 계획 재정비 시에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디자인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론과 사업 모델 등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1〉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18~2025)

구분	주요내용
공공디자인의 현황 조사	- 상위계획 분석 - 아산시 행정현황 및 관련 법 제도 조사 - 권역별 공공디자인 현황 및 사례 조사
공공디자인 비전 및 기본방향 제시	- 조사결과, 상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분석 - '시민 행복'과 '도시 성장'을 아산시 공공디자인 계획의 방향으로 하고 기본방향 도출 - '미래 아산의 자산 보존', '공생과 공존을 통해 미래로 발전', '비움과 소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높임', '산업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방향으로 설정 -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을 토대로 아산시 특성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전략 도출 - 권역별 공공디자인 방향 및 전략사업 제시
표준디자인 개발	- 아산시에서 진행되는 공공디자인사업, 유지보수, 시설물 교체 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디자인 제시 - '공공성', 'CPTED', '통합성', '유니버설디자인', '정체성' 이 반영되도록 공공시설물 대상 표준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	- 아산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색채 유형 대상 - 아산시 공공디자인의 목표,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기준, 지침 제시 - 권역별, 유형별 체크리스트 제시
실천전략 제시	- 단기, 중기, 장기계획 제시 - 디자인 행정조직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 제시 - 공공디자인 인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 제시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제시

자료 : 아산시(2019),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공공디자인의 비전 : #미래 아산

- 아산시는 '시민 행복'과 '도시 성장'이라는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을 가지며, 시민이 행복한 미래, 성장한 도시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이루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비전을 설정
- 해시태그(#)란 정보를 묶어 분류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며, 이는 SNS에서 활용되면서 점차 문화현상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사용

공공디자인의 목표

-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시 방향성인 '시민 행복'과 '도시 성장'을 아산시 공공디자인 계획의 기초로 하여 기존 도시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맥락을 유지

" 시민 행복이 보장되고, 성장하는 도시 아산 "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5개의 권역별 고유한 방향성을 가진 발전계획
- 아산시의 사회영역 전반의 인식 향상과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하도록 공통된 미래 비전을 가짐
- 지켜며 보존해야 하는 환경, 문화 등을 보존하고,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도록 유지·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아산 정체성을 강조
- 아산시의 지켜며 보존해야 하는 환경,문화 등을 보존하고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도록 유지 및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아산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공공디자인 계획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전략

[아산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전략]

기본원칙	전략
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용도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공간분리를 진행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 주·야간 안전하고 밝은 개방적인 도시환경 조성 · 구도심, 원도심, 농촌 등 대상지 특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진행시 우선시 해야 하는 전략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개인의 신체적·언어적 차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환경, 시설환경, 매체환경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배려하는 생활환경 조성 · 어디든 걸어서 갈 수 있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 시민들도 관광객도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통일 및 안내시설물 개선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아산시를 상징하고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 및 관문경관의 조성 · 노후된 시설,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선으로 균형 있는 도시 이미지 조성 · 역사·문화·예술 분야의 확장 적용으로 시민 삶의 풍요와 품격을 향상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실행(공공디자인 관련부서 및 일반인 대상 교육 등) · 유지·관리·보수가 용이한 건축물, 공간, 시설물로 조성 · 표준디자인 및 표준시설물 적용으로 통합적 공공디자인 관리

[그림 10] 아산시 공공디자인 비전, 목표, 기본방향, 기본원칙 및 전략

출처 : 아산시(2024). 「2030 아산시 경관계획」

3. 2030 아산시 경관계획

- ❍ 아산시는 2024년에 경관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관가이드라인도 개발하였음
- ❍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색채경관,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경우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 하지만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등은 앞서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중첩되는 요소들임
- ❍ 가이드라인 내용측면에서 보면, 경관가이드라인에서는 주로 주변과의 조화성 및 연계성, 조망성, 정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위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에 따라 안전성, 편의성, 범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 ❍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시설물들의 통합적 계획, 지역의 정체성 등 경관가이드라인의 지침 내용 중 중첩되는 내용이 많음
- ❍ 즉, 아산시 경관계획의 경관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 중 공공시설물은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는 있으나, 두 계획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와 지침 내용들 중 일부 중첩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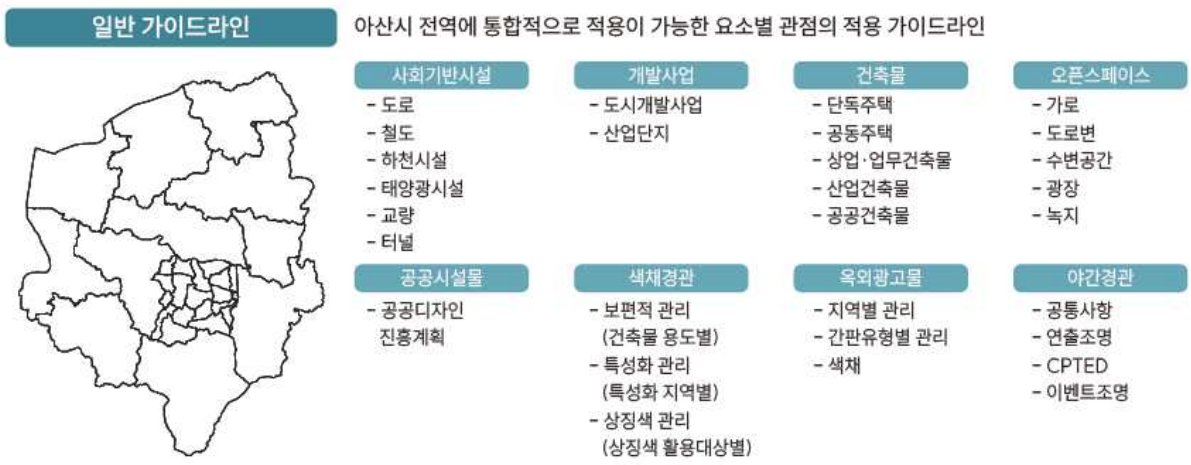

[그림 11] 2030 아산시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중 공공디자인 해당 영역

출처 : 아산시(2024). 「2030 아산시 경관계획」

04 타 지자체 사례 분석

1. 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구성

- ❍ 타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사례 분석을 위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을 위해 나라장터에 탑재한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를 분석하였음
- ❍ 내용 구성을 보면,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및 관련 동향과 정책 분석,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가이드라인 구축은 모든 지자체에서 과업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음(〈표 12〉)
- ❍ 또한 중앙부처(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선도(시범)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 제도와 경관 등 관련 분야 제도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는 지자체가 많았음
- ❍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디자인과 분야 및 범위가 유사한 경관심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의기준 수립이나,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 및 경관 관련 분야와의 협력,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자체 역시 많은 추세임
- ❍ 이 외에 인증제 등 표준디자인 개발, 타 부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협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매뉴얼 및 사후 관리방안,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운영을 계획 내용에 포함하는 지자체도 있음
- ❍ 특히,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유니버설디자인이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공공디자인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에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 한편, 안성시와 하남시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도시 전반에 있어서 정책이나 제도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통합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나 '표준디자인 개발'이나 '사업 매뉴얼(체크리스트) 및 사후 관리방안' 등은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2〉 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내용 구성

구성	시·군·구										
	강남구	영등포	강서구	안성시	하남시	시흥시	광양시	영주시	의성군*	울주군	하동군*
기초조사, 관련 동향 및 정책 분석	●	●	●	●	●	●	●	●	●	●	●
비전,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추진전략 제시	●	●	●	●	●	●	●	●	●	●	●
가이드라인 구축 (유니버설/범죄예방 디자인 포함)	●	●	●	●	●	●	●	●	●	●	●
표준디자인 개발			●		●		●	●			
심의기준 수립		●		●		●			●		●
제도 개선		●	●	●	●	●	●	●	●	●	
선도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	●	●	●	●	●	●	●	●	●	
사업 매뉴얼 (체크리스트) 및 사후 관리방안		●	●		●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	●	●	●	●	●		●	●		●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방안	●	●	●		●	●	●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						
공직자 대상 교육				●		●		●			●
품질관리 및 확산			●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함께 발주한 지자체

2. 사례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특성

- ❍ 앞서 분석한 11개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구성 내용 중 특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음
- ❍ 우선 '기초조사, 관련 동향 및 정책 분석'과 관련하여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지구내 민원 분석을 통해 공공디자인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의 민원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념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 하동군에서는 공공디자인 조사 시 인접한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성, 조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비전,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추진전략 제시'를 위해 하남시에서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초조사, 관련 동향 및 정책 분석'에서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계획의 틀을 구성하기 위한 비전, 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하동군의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경관계획 용역을 하나로 발주하여 '가이드라인 구축'에 있어서 경관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경관 가이드라인과 중첩되어 생기는 문제에 대비하고, 특히 가이드라인 활용 및 관리방안을 위해 담당자 교육 실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 '제도 개선'에서는 주로 심의, 자문, 협의 등 디자인관리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하남시의 경우 심의, 자문, 협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이나 표준디자인을 준용할 수 있는 검토항목을 제시, 시흥시의 경우 심의, 자문, 협의의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각 부서 사업의 공유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디자인관리 제도의 운용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선도(시범)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시흥시 공약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 단기/중기/장기 추진사업과 우선순위 제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시범사업을 타 부서 및

산하기관,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중장기적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 매뉴얼 및 사후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지만, 영등포구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 관리 체크리스트, 시설물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디자인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방안’은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에서는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행정체계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으로서 디자인씽킹이나 택티컬어바니즘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시흥시에서는 민간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 방안과 주민참여 기법을 활용한 사업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이 외에 하남시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에 유니버설디자인(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념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선도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 제1차 공공디자인 종합 진흥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공직자 대상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지자체는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흥시의 경우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체계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공디자인 체계 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표 13〉 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구성 내용의 특성

구성	내용	지자체
기초조사, 관련 동향 및 정책 분석	 출처 : 서울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3.3.)	강남구
	- 인접한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검토	하동군
비전,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추진전략 제시	- 도시계획, 경관, 건축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연계방안 제시	하남시
가이드라인 구축 (유니버설/범죄예방 디자인 포함)	- 경관계획과 연계 - 가이드라인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 공공디자인 개념과 업무 적용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방법 제시	하동군
제도 개선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 심의/자문/협의 시 분야별 공공디자인 검토 매뉴얼(체크리스트 등) 작성 : 신청자(사업부서 담당자 등) 및 공공디자인 협의 담당자를 위한 세부 매뉴얼 제시 : 각종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검토항목 작성	하남시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과 범위 등 - 공공디자인 체계 구축 및 관리 전략 제시 : 공공디자인 협업 행정 프로세스 정립 : 각 부서 사업 공유 및 사업 연계 및 방안 제시	시흥시
선도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 공공디자인 전략사업 발굴 및 연차별 실행계획 :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시흥시 2040 도시계획', '시흥시 공간환경전략계획', 'K-시흥공약'과 연계하여 연차별 공공디자인 전략사업 및 시책 개발 :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추진 단계 로드맵 및 우선순위 제시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권역별 3개 이상) · '공공디자인 전략사업' 중 우선사업지역을 선정하여 대상지별 기본계획(공간, 시설, 매체 등) 수립 · 타 부서 및 산하기관 추진 사업 및 국가 공모사업 연계 방안 마련	시흥시

	· 사업별 집행계획, 사업비 산정, 예산확보 방안 실행계획 등 구체화 제시	
사업 매뉴얼 (체크리스트) 및 사후 관리방안	- 가이드라인 활용 및 관리방안 등 매뉴얼 제시 -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 관리 방안(체크리스트) 마련 - 공공디자인 시설물 등의 관리체계, 원칙 등 사후관리 방안 수립	영등포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방안	- 디자인씽킹 기법*을 활용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및 택티컬어바니즘**에 기반한 실험·실증 등의 다양한 행정체계 모델 및 신규 제안·확산을 위한 방법 고안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공공환경 등 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 * 사람의 '니즈'를 공감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어 프로토타입과 테스트의 실패를 반복하며 최선의 답을 찾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 하루 또는 일주일 등 짧은 기간을 바탕으로 가설공간의 실증적 실험을 실시, 지역주민과 시민간의 공공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증적 실험기간을 한 달, 1년으로 기간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매우 적게 들지만 실험적 검증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합의가 형성되면 점차적으로 상설 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음	강남구
	- 공공디자인 체계 구축 및 관리 전략 제시 : 총괄계획가 및 분야별전문가 컨설턴트 제도를 활용한 협업방안 제시 - 디자인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 방안 제시 :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단계별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활용방안 :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등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구체적 시민 참여 사업 제시 : 공공디자인 전담기관(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경기도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 학술단체, 대학공공디자인연구소 및 센터 등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성	시흥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 -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기본계획 및 전략 - 가이드라인 - 선도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기본구상(10개소 이상) -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하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 -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 - 기본계획 및 전략 - 가이드라인 - 선도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기본구상(10개소 이상) -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하남시
공직자 대상 교육	- 공공디자인 체계 구축 및 관리 전략 제시 : 디자인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단계별 공공디자인 교육체계 제시	시흥시

3. 서울시 사례

- ❍ 서울시의 경우 2019년에 수립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만료시기 도래로 인해, 현황을 반영한 진흥계획 재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2023년 2월에 발주하였음
- ❍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보면, 타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위해 발주한 과업지시서 구성과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음
-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모든 지자체에서 기초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표와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 즉, 권역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공공디자인 범위에 해당되는 유형 또는 요소별로 조사를 하는 타 지자체의 일반적 수행 방식이 아닌 조사의 방법과 대상을 우선 설계하여 이를 위한 툴을 만들고 조사를 진행하는 보다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음
- ❍ 이 외에, 공공디자인 방향과 목표 설정, 선도사업 발굴 및 실행방안 제시, 제도 개선방안 제시, 그리고 민간 확산 방안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방안 제시 등 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구성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 내용은 모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의 방법과 대상을 우선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 타 지자체와 다름
- ❍ 한편, 타 지자체에서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구축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디자인서울 2.0' 발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 서울시는 2023년에 '디자인서울 1.0'을 발표한 지 17년 만에 '디자인서울 2.0'을 발표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진흥계획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음(〈표 14〉)
- ❍ 2006년에 '디자인서울 1.0'을 통해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조성하였으며, 이번에 발표한 '디자인서울 2.0'은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디자인'의 5원칙을 토대로 특화경관 조성 및 미디어 산업 육성, 공공미술 명소 조성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다양한 이해관계주체와 디자인 교류, 안전/재해 등 안전한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디자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서울시의 경우 표준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 개발보다는 서울시는 물론 국외 및 타 지자체에서 그동안 추진한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들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내용들을 도출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표 14〉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 구성

구분	주요내용
실태조사 기획 및 수행	- 조사 자문회의 -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등
공공디자인 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	- 국내외 공공디자인 여건 변화 및 관련 정책 분석 -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적용방안
종합적 및 체계적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안	- 디자인서울 2.0과 연계한 영역별, 권역별, 지역별, 가로별 종합계획 수립
선도사업 발굴 및 실행방안 제시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발굴 -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효과적 실행, 적용방안 제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국내외 정책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공공디자인 관리 및 민간 확산 방안 제시	- 기관, 담당자 등에 상관없이 일관된 품질제공을 위한 관리 방안 제시 - 국내외 홍보 및 교육 방안,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
관련기관, 시민,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방안 제시	- 유관부서·기관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민간기업 및 시·구 간의 체계적인 공유·협력 시스템 제시 - 사업별, 단계별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제시

자료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과업내용서」(2023.2.)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05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방향 및 정책제언

1. 기본방향 도출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방향은 앞에서 분석한 국가 공공디자인 관련 법 제도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구성에서의 시사점을 반영하면서, 아산시 공공디자인 관련 법 제도 및 경관계획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함([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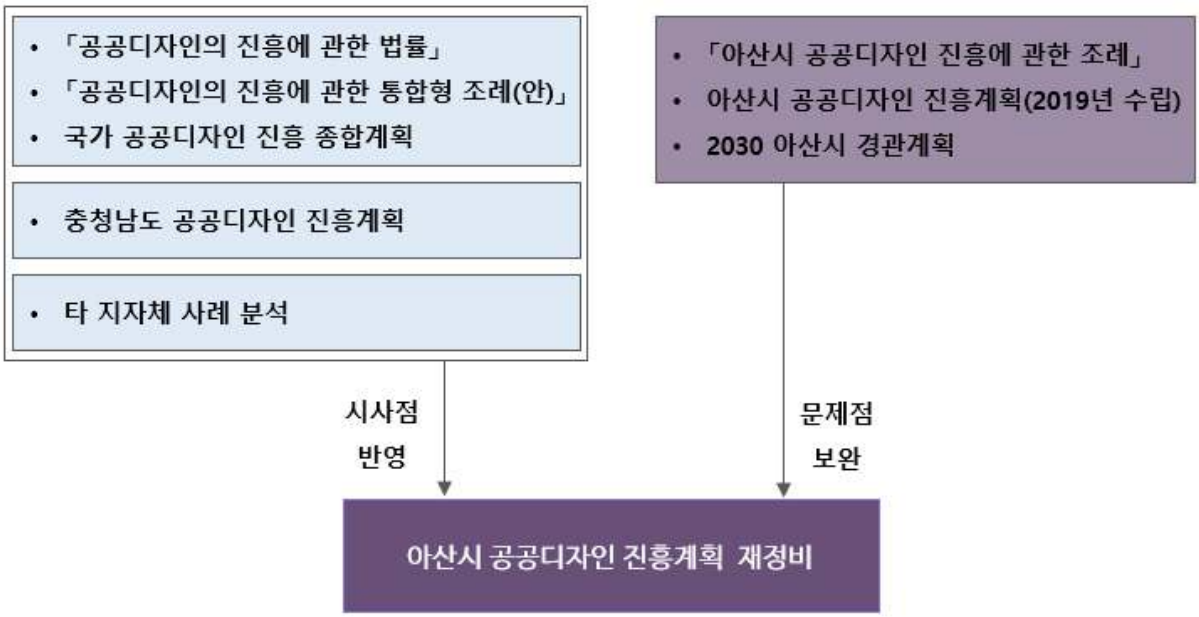

[그림 12]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방향 도출

❍ 분석을 통해 [그림 13]과 같이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국가 및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가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을 공공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통합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안전과 재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문화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이 포함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국가 계획을 따르면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제시하는 사업 방향과 가이드라인, 아산시 발전방향, 시·군으로서의 역할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하고 관련 계획과 연계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따른다면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곧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단순한 공공시설물 계획이 아닌 공간계획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함
- 공공디자인 영역의 확대는 결국 건축, 경관 등 관련 분야 계획과의 연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이에, 공공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분야인 경관과의 역할 분담, 범위 및 영역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심의 대상 등을 명확히 하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실행력이 확보되는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법 제도나 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구성 사례를 봤을 때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실행계획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실제 다각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실천전략, 제도 개선(심의기준 수립), 사후

운영관리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아산시의 경우 2019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 등을 구축하였으므로, 금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시에는 기정 계획 및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사업 등 적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주민참여 및 공무원 대상 교육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이 보다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 방법과 대상 등 조사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기반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방식은 실행력 확보 및 공공디자인 기반 실태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산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 방향과 목표를 실현하면서 실제 주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을 통해 공공디자인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제시하는 사업들이 모두 수행되었을 때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초체력(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관이 주도하는 공공디자인 실행 및 관리가 아닌 자생적으로 공공디자인 실행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주민참여와 주민교육 방법론 및 실행, 이와 더불어 공무원 교육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강남구의 ‘디자인씽킹’, ‘택티컬어바니즘’ 기법을 적용한 모델 제안 및 확산하도록 하는 사례나 시흥시의 주민참여 사업을 제시하도록 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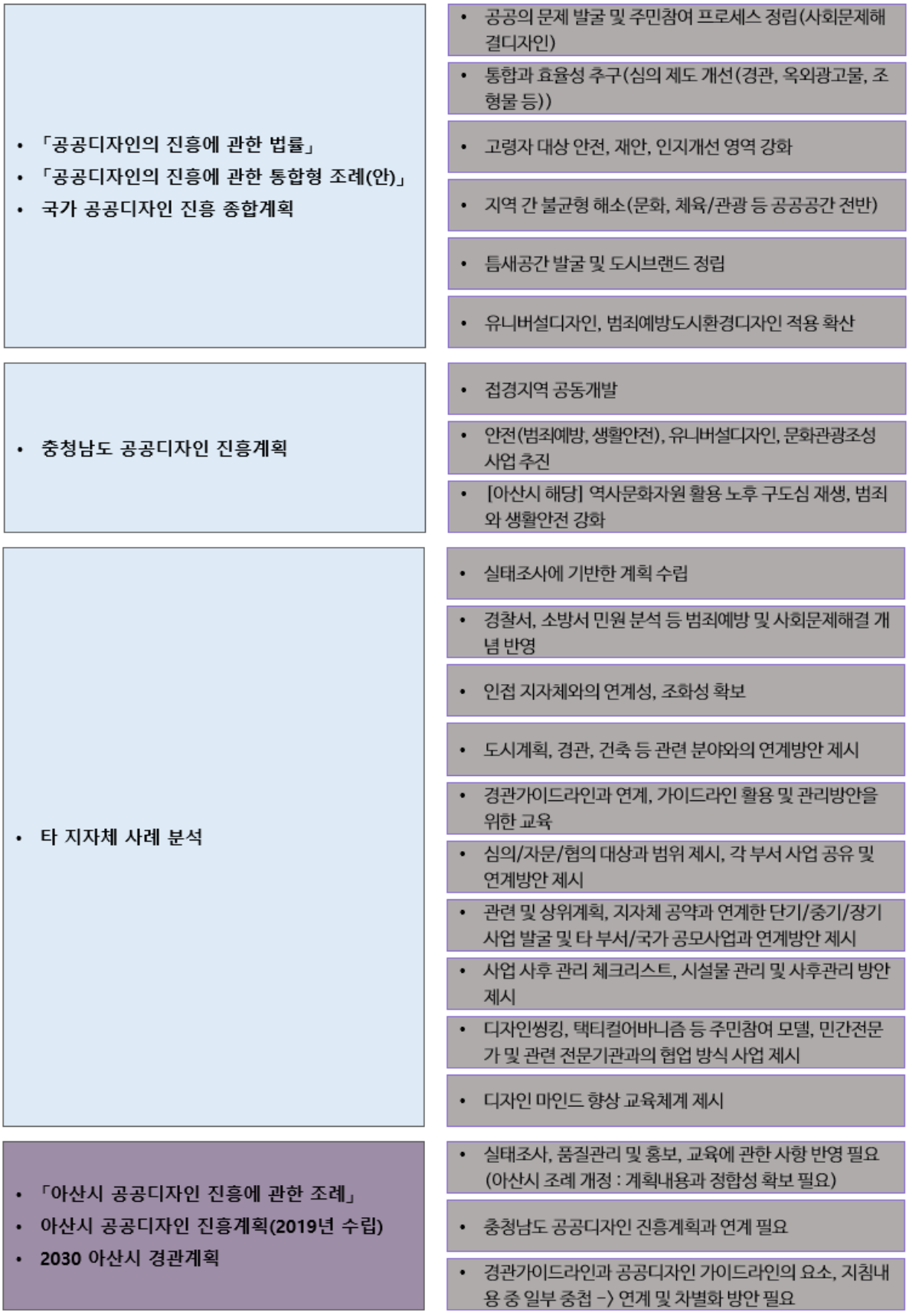

[그림 13] 법 제도 및 타 지자체 사례에서의 시사점, 아산시 법 제도에서의 문제점

2. 재정비 시 포함 내용 제안

- ❍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내용들을 제안함
- ❍ 아산시 진흥계획 재정비는 ①실태조사 및 분석, 관련 동향 및 정책 분석, ②비전,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③공공디자인 구축 및 관리 계획 수립, ④사업발굴 및 실행계획, ⑤제도 개선방안 제시, ⑥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재정비, ⑦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 ⑧관련 분야 협력 및 주민참여, ⑨사업 매뉴얼 및 사후 관리방안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 우선 '①실태조사 및 분석, 관련 동향 및 정책 분석'에서는 계획 재수립인 만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후 5년간 공공디자인의 기반(사업, 제도, 역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사전 조사설계, 공공디자인을 공간계획으로 영역 확장을 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 '②비전,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를 위해서는 국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아산시 경관계획, 도시계획 등과 연계 및 차별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유니버설/범죄예방/사회문제해결 디자인 등 안전과 생활편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함
- ❍ '③공공디자인 구축 및 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천안, 예산 등 아산시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관리 현황 등과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아산시 공공디자인 비전, 기본방향 및 목표를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함
- ❍ '④사업발굴 및 실행계획'에서는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아산시가 생활밀착형, 자생적 공공디자인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모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을 발굴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함
- ❍ '⑤제도 개선방안 제시'에서는 공공디자인을 공간계획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면 경관, 건축 등 관련 분야와의 역할 분담, 범위 및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 확보, 각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함
- ❍ '⑥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재정비'에서는 기존 개발된 내용들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정비하고, 경관가이드라인과의 관계 정립, 각 부서에서의

가이드라인 활용 및 관리방안을 위한 교육도 함께 모색되어야 함

- ‘⑦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서는 피상적으로 교육의 필요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이해관계자인 주민, 공무원 대상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활용과 관리, 사업 모델 발굴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⑧관련 분야 협력 및 주민참여’에서 역시 공공디자인 이해관계자인 주민, 공무원, 전문가, 전문기관 간 협력 방안을, ‘⑨사업 매뉴얼 및 사후 관리방안’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 및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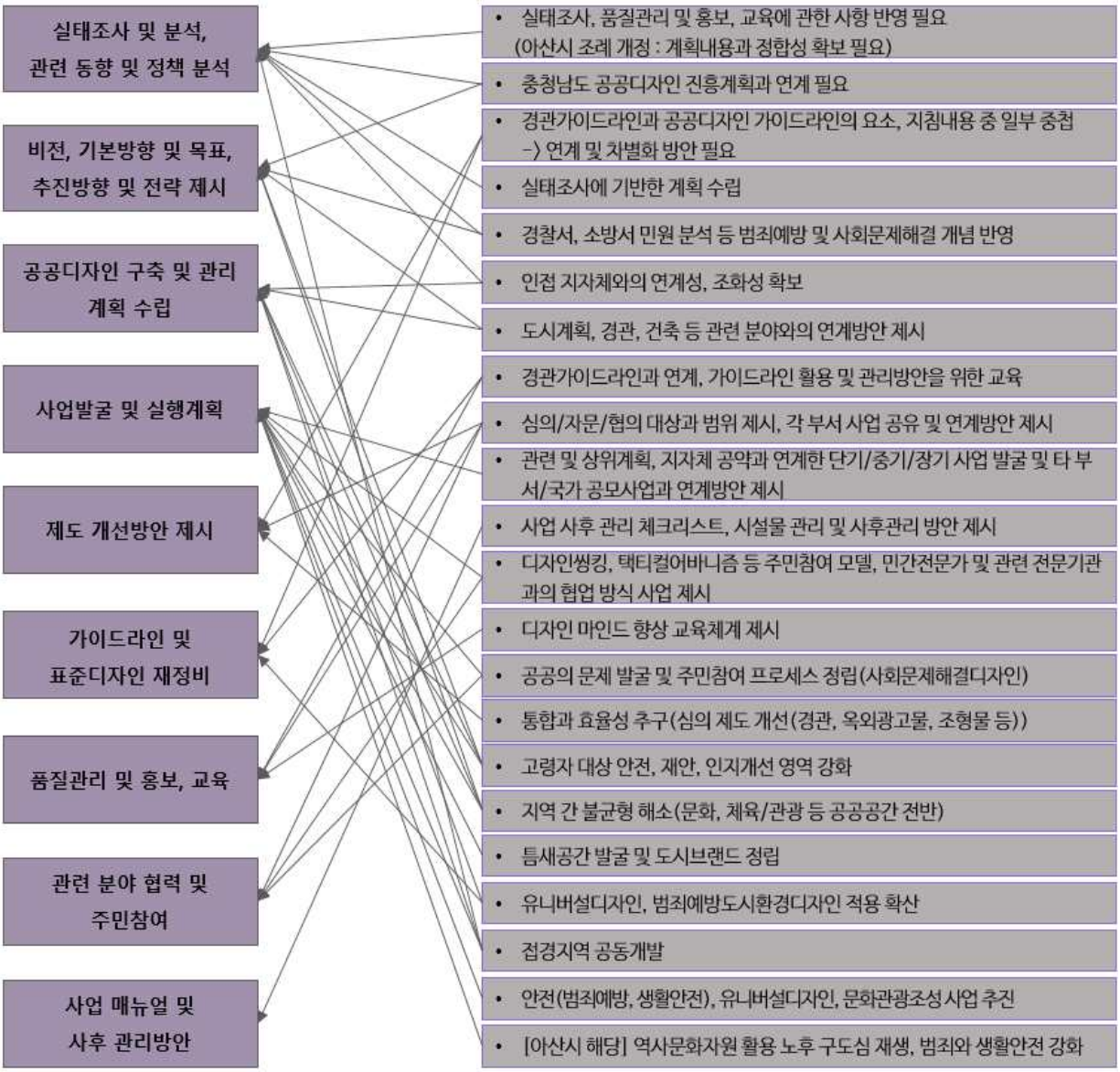

[그림 14]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방향 제시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내용 구성 및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법 제도, 국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계획 분석을 통해 상위계획과의 연계 방향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공공디자인의 범위는 공공시설물에 한정하기보다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등 공간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므로 건축, 경관 등 관련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공공디자인은 생활편의, 안전을 추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문화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공공의 문제 발굴 및 해결, 통합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충청남도 계획의 기본개념인 '안전', '사람중심', '생태관광', '문화역사'를 반영하면서 이를 위한 전략사업,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이라는 아산시 발전방향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둘째, 아산시 조례 및 관련 계획 분석을 통해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방향을 도출하였음

- 국가가 제시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과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내용이 상이하나, 국가가 제시한 통합 조례를 따라 광역계획 반영 및 공공디자인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져야 함
- 아산시 경관가이드라인에서의 요소와 지침 내용들 중 일부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중첩되므로 연계 또는 차별화 방안이 필요함

❍ 셋째,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초조사 및 관련 정책 분석, 비전/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가이드라인 구축, 제도 개선, 선도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외에 표준디자인 개발, 사업 매뉴얼 및 사후관리 방안, 공공디자인 인식

교육 등을 포함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및 수립 방법에 차이가 있음

- 최근에는 경관과 공공디자인 계획이 유사하고 중첩된다는 이유로 계획을 하나로 발주하여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자체도 있음

❍ 넷째, 앞서 분석한 내용들의 시사점과 문제점을 토대로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음

- 계획의 구성은 ①실태조사 및 분석, 관련 동향 및 정책 분석, ②비전,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③공공디자인 구축 및 관리 계획 수립, ④사업발굴 및 실행계획, ⑤제도 개선방안 제시, ⑥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재정비, ⑦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 ⑧관련 분야 협력 및 주민참여, ⑨사업 매뉴얼 및 사후 관리방안으로 제안하였음
- 계획의 재수립인 만큼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를 위한 사전 조사설계, 안전과 생활편의 관점에서 국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계획, 아산시 경관/도시계획 등과 연계 및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인접한 천안, 예산 등과의 연계 및 일관성 확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모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사업 발굴, 공공디자인 이해관계주체의 역할과 협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등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제안하였음

[참고문헌 및 자료]

(1) 단행본

관계부처 합동. 2018.「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7.「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0.「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아산시. 2019.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아산시. 2024. 2030 아산시 경관계획

충청남도. 201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 학회지

최성호. 2022.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제7권 제4호

(3)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3년 시행. 법률 제19592호(2023.8.8., 타법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시행.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타법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3호, 2016.8.4., 제정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17년 시행. 조례 제1656호, 2017.6.5., 제정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2024년 시행. 규칙 제908호, 2024.6.5., 일부개정

(4) 전자 문헌 또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2022.3.)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2023.5.)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과업내용서(2023.2.)

서울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3.3.)

서울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2024.1.)

서울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2024.3)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4.1.)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4.)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3.3.)
의성군 경관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과업지시서(2023.9.)
하동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4.1.)
2030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이행요청서(2023.4.)
2035 울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2023.12.)